

부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가합455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피 고 1. B

2. C

3. D

4. 주식회사 E

5. F

6. G

7. H

변론 종결 2021. 1. 14.

판결 선고 2021. 1.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I 의 피고 B에 대한 2015. 2. 17.자 81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8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B와 공동하여 위나. 항 기재 돈 중 피고 C는 83,000,000원, 피고 D은 5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E는 340,000,000원, 피고 F은 33,000,000원, 피고 G은 33,000,000원, 피고 H은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J의 피고 H에 대한 2015. 5. 4.자 2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H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주식회사 I (이하 'I'라고 한다)는 부동산 분양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4. 24.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고, J은 당시 I의 대표이사였다.
- 2) 피고 B는 J의 어머니이고, 피고 C, H, F은 J의 형제자매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 피고 G은 피고 H의 남편이다. 피고 주식회사 E(2015. 5. 30.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C가 사내이사, 피고 H이 감사로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I와 J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J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J은 230,077,450원을 2019. 12. 19.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약정하였다.

다. I의 피고 B에 대한 금원지급 등

1) I는 2015. 2. 17. 8억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I 대표이사 J의 어머니인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금원지급행위'라고 하고 위 금원지급행위로부터 피고 B가 지급받은 금원을 '이 사건 제1금원'이라고 한다).

2) 피고 B는 2015. 2. 24.부터 2015. 10. 15.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금원 중일부를 피고 C, D, F, G, H과 피고 회사(이하 피고 B로부터 돈을 받은 피고들을 '피고C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하였다.

지급상대방	지급일	지급금액	내역
피고 C	2015. 2. 24.	5,000만 원	피고 B는 2015. 2. 24. 피고 C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위 수표는 피고 C 명의의 대출금 5,000만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2015. 5. 15.	3,300만 원	피고 B는 2015. 5. 15. 3,3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돈은 피고 C의 아파트 분양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 D	2015. 2. 24.	5,000만 원	피고 B는 2015. 2. 24. 피고 C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위 수표는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D 명의의 대출금 5,000만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피고 회사	2015. 2. 25.	1억 5,000만 원	피고 회사는 2015. 1. 3. L로부터 부산 연제구 소재 M아파트 N호를 매수하였고, 피고 B는 2015. 2. 25.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L

			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015. 3. 26.	1,000만 원	피고 B는 2015. 3. 26. 피고 회사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015. 6. 10.	1억 8,000만 원	피고 회사는 2015. 5. 26. O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 P아파트 Q호를 매수하였고, 피고 B는 2015. 6. 10. 매매대금 중 1억 8,000만 원을 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 F	2015. 5. 16.	3,300만 원	피고 F은 2015. 5.경 부산 동래구 소재 R아파트 S호를 분양받았고, 피고 B는 2015. 5. 16. 위 분양계약금 3,300만 원을 T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 G	2015. 5. 15	3,300만 원	피고 B는 2015. 5. 15. 3,300만 원을 피고 G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돈은 피고 G의 아파트 분양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 H	2015. 10. 15.	1,000만 원	피고 B는 2015. 6. 9.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분할발행한 후 2015. 10. 15. 1,000만 원을 피고 H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J의 피고 H에 대한 금원지급

J은 I가 2015. 2. 17. 출금한 2,000만 원의 수표에 2015. 5. 4. 배서를 한 후 이를 동생인 피고 H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금원지급행위'라고 하고 위 금원지급행위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 사건 제2금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C, H, G은 2020. 7.22. 이 법원에 청구인낙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공증사무소의 인증이 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에서 정한 청구인낙의 효력은 없고, 다만 주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의 주장

가. I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8억 1,000만 원을 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증여하고, J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H에게 2,000만 원을 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증여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설령 I와 J의 위 각 금원지급행위를 피고 B, H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 B, H은 I의 대표이사인 J의 가족들로서 I, J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I, J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로 위 각 금원을 변제받았던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J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금원지급행위(이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B가 수익한 돈 중 일부를 다시 피고 C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거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기는 하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등 참조), 자백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대법원2000. 5. 14. 선고 2000다42908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금원지급행위는 2015. 2. 17., 이 사건 제2금원지급행위는 2015. 5. 4.에 있었고, 이 사건 소가 위 각 금원지급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0. 6.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각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판사 김문성, 판사 안혜미